

2024년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운용 계획

「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·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4조(전승지원 계획 수립)에 따라,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운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1. 전수교육지원금 (매월)

- 지급대상 : 전수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보유자, 전승교육사, 보유단체
- 지급기준

구 분	보유자	전승교육사	보유단체	
			일반단체	자율전승형
지원금	월 2,000,000원	월 900,000원	월 3,800,000원	월 5,800,000원

* ‘자율전승형 보유단체’는 전승활성화를 위해 보유자가 있는 경우보다 월정 전수교육 지원금을 추가 지원

2. 우수이수자 장려금 (매월)

- 지급대상 :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중 3년 이상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국
보유자 및 보유단체,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은 우수이수자
- 지급기준 : 월 500,000원 * 선정 후 최대 2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

3. 전수장학금 (매월)

- 지급대상 : 취약종목 보유자에게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전수장학생
 - * 취약종목 보유자 1인당 3명 이내 선발, 선발 후 최대 5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
- 지급기준 : 월 300,000원

4. 전승활동 장려금 (연 1회)

- 지급대상 : 연간 전승활동 실적 등이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
개인종목의 보유자·전승교육사와 보유단체
- 지급기준 : 종목 특성 및 전승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

구분	분야	평가 사항
개인 종목	예능, 놀이, 무예	① 전수교육 횟수 ② 대외 전승활동 실적 등 * 일반종목과 취약종목을 구별하여 별도 범주 내에서 평가
	기술, 생활관습	
단체 종목	예능	① 전수교육 횟수 ② 대외 전승활동 실적 ③ 전승지원금 집행지침 준수 여부 등
	놀이, 무예, 의식, 기술, 생활관습	

* 코로나 상황 및 운용 여건상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.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

- 지급시기 : '24. 12월(예정)
- 전승활동 실적점검 기간 : '24. 1월 ~ '24. 10월

5. 취약종목 추가 지원금 (연 1회)

- 지급대상 : 전승취약종목('23.4월 선정)의 보유자, 전승교육사

- 예능(5종목) : 서도소리, 가곡, 가사, 줄타기, 발탈
- 기술(20종목) : 갯일, 한산모시짜기, 매듭장, 나주의 섯골나이, 낙죽장, 조각장, 악기장(편종·편경 제작), 장도장, 두석장, 백동연죽장, 망건장, 탕건장, 바디장, 전통장, 배첩장, 화각장, 윤도장, 선자장, 낙화장, 사경장
- * 전승취약종목은 3년마다 재선정

- 지원성격 : 전승활동 증진을 위한 추가지원금
- 지급방식 : 해당 보유자, 전승교육사가 추가 지원금을 신청(8~9월)하여 전승
활동* 실적과 증빙자료가 증명될 경우에 상한금액까지 연 1회 지급

* 전승활동 : 전승활동 재료구입 비용, 전시회·공연 개최비용 및 임차료 등

- 지급기준

구 분	보유자	전승교육사·이수자*
지원 상한금액	4,716,000원	3,132,000원

* 취약종목에 보유자·전승교육사가 없을 경우, 이수자에게 지원

6. 특별지원금

○ 지급대상 및 기준

-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(매월) : 월 1,000,000원
- 장례위로금 : 명예보유자·보유자(1,200,000원), 전승교육사(600,000원)
- 입원위로금 : 보유자(500,000원), 전승교육사(300,000원) / 10일 이상 입원 시, 연 1회

7. 전승지원금 지급 제한

○ 법적근거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제2항
- 「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·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8조(전승지원금의 지급 제한)

○ 제한대상 :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, 보유단체, 전승교육사, 우수이수자, 전수장학생

○ 전승지원금 지급 제한내용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<대통령령>

제22조(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)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원한다.

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

3.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

제22조의2(우수 이수자의 선정·지원)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.

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, 전시, 교육,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, 보유단체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신체적·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

3.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

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**우수 이수자**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.

제24조(전수장학생의 선정 등) ③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,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전수장학생이 법 제26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.

- ④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**전수장학생**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1. 신체적·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

2.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

- ⑤ 문화재청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.

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·운영에 관한 규정 <국립무형유산원 훈령>

제8조(전승지원금의 지급 제한) ① **보유자, 보유단체, 전승교육사, 우수 이수자, 전수장학생**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전승지원금의 지원을 일정기간 정하여 중단할 수 있다.

1.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2.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3.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② 원장은 보유단체에서 **제명된 보유자, 전승교육사 및 우수 이수자에게는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, 또한 해당 보유단체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유단체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**